

춘천지방법원 2021. 11. 30 선고 2020가단3140 판결 [사해행위취소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10. 26.

판 결 선 고 2021. 11. 3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 33,500,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7,908,400원 및 그 중 7,700,000원에 대하여 2020. 1. 2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는 2018. 6. 17.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, 2 기재 각 부동산과 같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 중 76/145 지분에 관하여 각 2018. 3. 23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(이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.

나. 원고는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법원 2020차1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. 1. 8. ‘C는 원고에게 7,7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.’는 내용의 지급명령(이하 ‘이 사건 지급명령’이라 한다)을 발령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2020. 1. 22. C에게 송달되었고, 2020. 2. 6.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-1~3, 2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요지

1)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33,500,000원에 대한 증여계약(이하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.

2)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C가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3)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원리금 7,908,400원 및 그 중 원금 7,700,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 단

1)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,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

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,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(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).

그리고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,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·증명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8. 3. 15. 선고 2016다219839 판결 등 참조).

2)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 여부

앞서 든 각 증거와 갑 3,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는 C의 아들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만 23세 남짓이었고, 부사관으로 군에서 복무 중이었던 사실,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, E(중복)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던 중에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위 인정사실에다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가 C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,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시기, 증여 금액 등도 특정하기 어렵다.

3) C의 무자력 여부

갑 5,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F는 C와 G을 상대로 이 법원 2008가소6875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C에 대한 2008. 5. 21. 'C는 F에게 17,000,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.'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,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8. 5. 21. 확정된 사실, H은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법원 2018차86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. 6. 20. 'C는 H에게 8,890,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보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.'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2018. 7. 16. C에게 송달되었고, 2018. 7. 31.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원고가 C에 대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

무렵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행위로 인하여 C의 무자력이 초래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4) 결국 원고가 사행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와 C의 무자력에 관한 증거가 모두 부족하므로,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 론

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판사 김도현